

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 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9.4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년 8월 27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0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13년 9월 4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토목과장 임경선

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재정비하고,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 제명 등 띠어쓰기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상위법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소규모 공사 금액 기준 상향함(안 제2조 1호 및 2호).
- (2) 소규모 공사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조항 신설함(안 제7조 제2항).
- (3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

3. 검토보고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재정비하고,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

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며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고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은 2008년 12월 9일 상위법인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시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 1호 소규모공사의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변경하였고,

안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, 2010년 12월 13일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50조를 제102조 제1항으로, 제52조 제1항을 제105조 제1항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며,

기타 조례 제명 등 각종 용어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